

『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9월 1일

나. 발 의 자 : 김근아, 강승수, 권기만, 손홍섭, 안주찬,
양진오, 정하영, 허 복, 김상조, 안장환 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9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근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진실, 질서, 화합을 이념으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육성·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, 공동운명체로서의 시민화합을 이뤄 선진 구미시 만들기에 이바지하고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)

- 바르게살기운동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안 제8조)
-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, 제4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·발전시키고,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,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게 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, 국토대청결 운동, 도덕성 회복운동 등을 통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